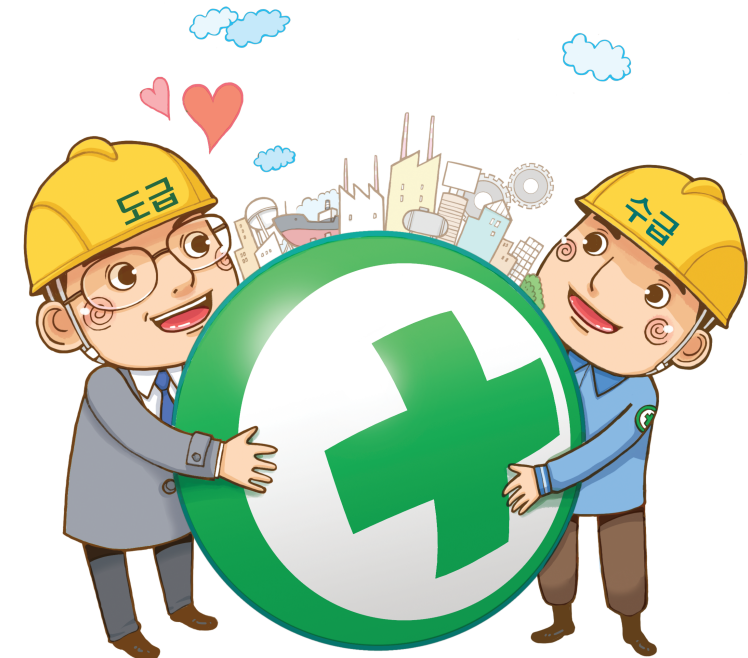


사내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제조 · 서비스업 등

사내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제조 · 서비스업 등



사내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제조 · 서비스업 등



일반적으로 건설업과 조선업은 하도급 생산구조가 보편화 되어있고, 제조업은 공장 정비 · 보수 · 증설의 경우 외주작업이 관행화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급의 일반화는 안전보건관리 능력이 취약한 영세 수급업체로 위험까지 전가되어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습니다.

이러한 수급업체의 산업재해는 수급 사업주 자신뿐만 아니라 도급 사업주 에게도 생산활동 차질, 법적 책임, 기업이미지 훼손 등 유 · 무형의 경제적 손실을 발생하게 합니다.

이에,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 능력을 높여 같은 장소에서 작업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도움이 되고자 본 매뉴얼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매뉴얼에 나와 있는 안전보건활동 체계와 절차, 우수사례를 참고하여 사업장 실정에 맞는 안전보건 체계를 확립하여 근로자의 안전 · 보건 증진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2016. 6.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백화진**

Contents



I.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의 필요성

4

1.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란? 4
2.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가 왜 중요한가요? 5
3. 도급인이 책임을 다하지 않아 생긴 사고는 어떤 것이 있나요? 6



II. 도급사업 안전보건활동 체계

8

1. 도급사업수행 시 안전보건활동을 위한 구성요소는? 8
2. 유기적인 안전보건활동을 위한 방법은? 9
3. 도급사업 단계별 검토 · 수행해야 할 안전보건 활동은? 11



III. 도급사업 단계별 안전보건 활동내용

12

1. 도급사업 계약 시 12
2. 도급사업 수행 시 17
3. 도급사업 평가 시 27



IV. 도급계약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28

I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의 필요성

1.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란?

- ㉠ 도급은 당사자(수급인)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임
 - 도급은 고용이나 위임과 같이 노무공급 계약의 일종이나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 있어서 고용이나 위임과 구별됨
- ㉡ 기본적으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의 이행의무가 있으나,
 - 도급인 사업장 내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에 대하여도 도급인에게 안전보건조치 이행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적책임을 묻고 있음
- ㉢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란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수급인 사업주를 포함한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 수급인 사업주에게 유해·위험정보 사전제공, 위험성 평가, 합동 안전보건 점검, 위험장소 안전보건 조치, 교육 지원 등 일련의 안전보건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음

2.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가 왜 중요한가요?

도급사업으로 인한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는 도급인의 경제적 손실과 법적 책임과도 관련되어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도급인의 역할이 중요하게 대두됨

| 유·무형의 경제적 손실 사전방지

- ㉔ 수급인 근로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 도급인에게도 생산활동 차질,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 언론보도로 인한 기업 이미지 훼손 등 다양한 유·무형의 손실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㉔ 이러한 손실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산업재해예방 활동을 기업경영의 필수 요소로 인식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사항

- ㉔ 수급인과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행하는 도급사업의 사업주는 그 사업의 관리 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고,
 - 자신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상 조치를 하는 등 법적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원·하도급 간 안전보건 격차해소의 사회적 책임 실천

- ㉔ 수급인 사업장은 도급인 사업장에 비하여 위험성이 큰 작업을 행하는 경우가 많아 산업재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고,
 - 사업규모의 영세함으로 안전보건관리 능력이 미흡하고, 작업장소가 도급인 사업장 내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는 재해예방에 한계가 있음
- ㉔ 수급인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 지원활동은 원·하도급 간 안전보건 격차를 해소하는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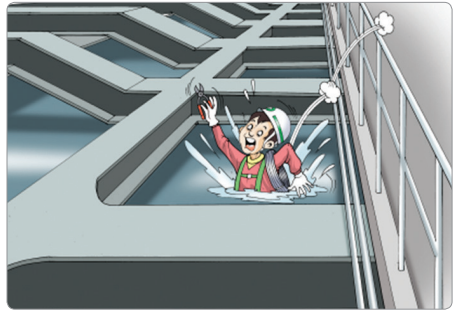
3. 도급인이 책임을 다하지 않아 생긴 사고는 어떤 것이 있나요?

| 도급인의 사전 안전조치 미흡

- 도급인이 관리하는 시설물의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의 승인없이 단독으로 안전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워 산재위험에 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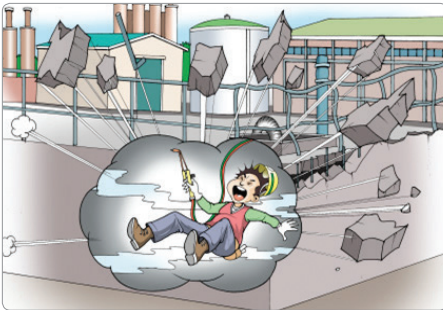
용광로 부유물 냉각 작업장에서 냉각수위 확인 중 냉각수(85℃)에 빠져 1명 사망



취수펌프장 전선관 설치작업 중 수로에 추락하여 1명 사망

| 유해 · 위험정보 사전에 미제공

- 작업과 관련된 유해 · 위험정보를 도급인이 제공하지 않아 수급인의 위험예측과 사전 대응이 곤란



폐수 집수조 내에 인화성 가스가 잔류하고 있음에도 불꽃이 발생하는 작업을 하던 중 폭발하여 6명 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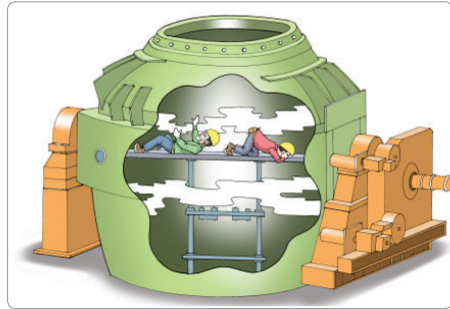
LCD 패널 가스실(밀폐공간) 작업 중 질소 가스에 의한 질식으로 3명 사망

| 혼재 작업 시 도급인의 안전관리 소홀

- 소속이 다른 근로자가 혼재하여 작업하는 경우 각 업체의 안전조치에 대한 도급인의 조정 및 관리 소홀로 안전관리 사각지대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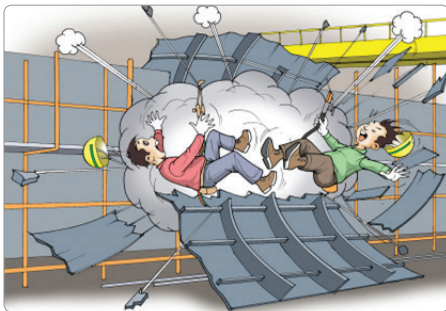
선박 내에서 용접작업과 방화포 설치 작업 등 다수 하청이 동시작업 중에 화재발생으로 2명 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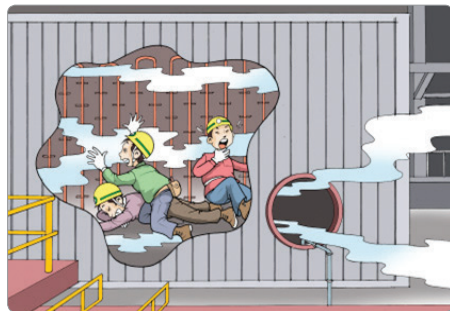
전로 내부에서 축로작업, 외부에서 아르곤 배관 접속작업 등 다수하청이 동시작업 중 전로에 아르곤가스 유입으로 5명 사망

| 안전이 고려되지 않은 계약 관행

- 원가절감, 공기단축을 우선하는 계약으로 충분한 사전 안전성 검토없이 작업 진행



바지선 블록 내 가스누출이 우려됨에도 용접 작업을 하던 중에 폭발하여 2명 사망



보수 작업 중임에도 가스유입의 시운전 작업을 동시 수행하여 1명 사망, 8명 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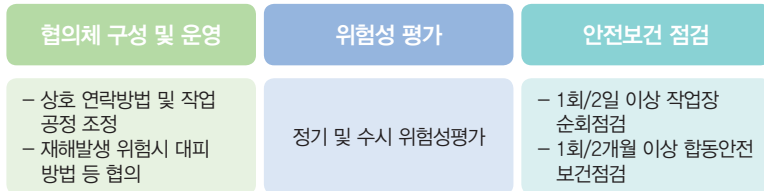
II

도급사업 안전보건활동 체계

1. 도급사업 수행 시 안전보건활동을 위한 구성요소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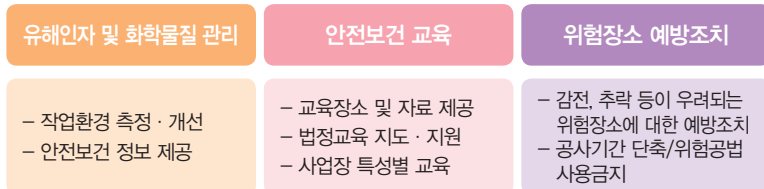
- ⑥ 도급사업 수행 시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수급인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사업장의 위험요소를 체계적으로 도출하여 개선하여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안전보건협업체 구성·운영, 위험성평가, 사업장 안전보건 점검, 산재발생 위험장소 예방조치, 수급사업장 안전보건교육 지도·지원, 유해인자 및 화학물질 관리 등 다양한 안전보건활동을 추진하여야 함

〈도급사업 안전보건활동 구성요소〉



도급사업 시 유기적인 원·하도급 간 안전보건 체계 구축

- 협업체 구성 및 활동, 위험성평가, 순회점검·합동안전보건점검, 위험장소 안전조치, 안전보건교육, 유해인자 및 화학물질 관리
- 우수 협력업체 선정 평가 및 육성



2. 유기적인 안전보건활동을 위한 방법은?

- ㉔ 수급인과 함께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항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함이 필요함

안전보건경영시스템

1 안전보건 방침 명확화

- 최고경영자의 철학, 의지 등을 반영한 안전보건방침 수립 · 게시
- 도급인 및 수급인 사업장 직원 등 조직의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 및 업무분장(역할 · 책임 · 권한) 명확화
- 각 수급인 사업장을 포함한 구성원 모두가 인식토록 지속적으로 주지하고, 회사에 적합한지를 정기적으로 검토

2 안전보건 목표 및 활동계획 수립

- 회사 안전보건 위험의 특성, 규모, 전년도 수준 등을 고려하여 안전보건 목표 설정
 - 목표는 구체적이고 달성 가능한 것으로 설정하여 전 구성원에 공표
 - 사업장 전체 목표, 부서별 세부목표, 이를 추진하는 책임자 지정
- 안전보건목표 달성을 위한 안전보건활동계획 수립 · 실행
 - 해당업무(작업), 단위별(팀별, 부 · 과별)로 수립
 - 수단 · 방법 · 일정 · 예산 · 인원 등이 포함된 세부계획을 수립

3 모든 근로자가 참여하는 위험성평가의 실행

- 위험성평가 대상은 모든 근로자(공사업체, 협력업체, 방문객 포함)에게 안전보건상 영향을 주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
 - 사업장 내 · 외부에서 작업장에 제공되는 유해 · 위험시설
 - 작업장에서 보유 · 취급하고 있는 모든 유해 · 위험물질
 - 일상적인 작업 및 수리 · 정비 등 비일상적인 작업, 비상조치작업
 - 교대작업, 야간작업, 장시간 근로 등에 대한 건강증진방안
 - 일시 고용, 고령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의 안전보건
- 위험성평가 조치계획은 다음의 순으로 검토하여 수립
 - 유해위험요인 제거→원재료, 설비 등의 대체→연동장치 설치 등 공학적 대책→안전보건표지, 작업절차서 정비 등 관리적 대책→개인보호구 사용

4 적극적 의사소통 추진

- 도급인 사업주와 수급인 사업주 전원이 포함된 협의조직(협의체)을 구성
 - 매월 1회 이상 사업장 안전보건과 연계된 안전회의 실시
 - 위험성평가의 목표관리 사항(중점관리 위험요인)에 대한 책임과 권한, 조치계획 명확화
 -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준수사항 및 안전작업을 위한 필요한 절차 협의
 - 작업공정 간 위험에 대한 소통 및 위험작업의 시기조정
- 위험성평가와 협의체회의에서 논의된 위험요인에 대하여 도급과 수급인 사업장간 합동안전보건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선박 및 보트건조업은 2개월에 1회, 그 외 사업은 분기1회)
 - 점검 시 도출된 사고 발생위험은 반드시 개선·환류 활동 실시

5 체계적인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 조직의 계층, 위험요인, 근로자의 업무 또는 작업특성을 고려한 교육훈련계획 수립
- 모든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 제반 정보 전달
- 안전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자는 업무수행능력에 필요한 교육, 훈련, 경험 등 적절한 능력을 보유·유지
- 비상시 대응절차는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교육 실시, 체득을 위해 주기적 훈련 실시

6 현장의 안전보건활동 추진

- 위험성평가, 협의체 회의 등에서 논의된 중점 위험요인* 과 대책에 따라 위험예지 훈련, 안전시설 설치 등을 이행하여 수급인 사업장에서 적절히 안전관리 활동을 하도록 지원
 - * 끼임, 부딪힘, 추락, 감전, 화재·폭발, 중독 예방 등
- 기계·장비·설비·원재료 등이 외부에서 반입될 경우 사전 안전성 확보
- 재해발생시 원인조사 실시 및 재발방지 대책의 적극적 실행
- 근로자의 보건·위생관리를 위해 정기적 건강진단 실시 및 적절한 위생시설 설치
- 안전보건수준 향상을 위하여 「계획-실시-평가-개선」의 과정이 적기에 실행되도록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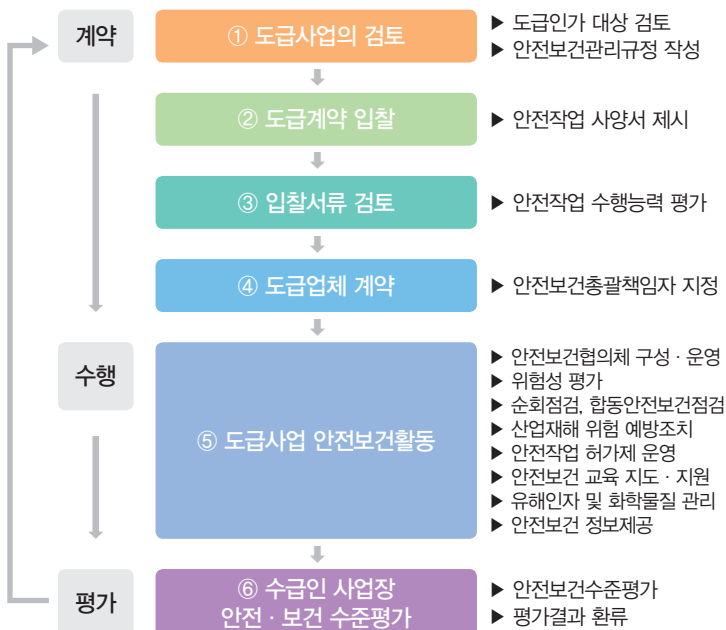
7 수급업체 평가 및 안전보건관리 체계에 개선반영

- 안전보건목표 및 세부계획이 적절하게 달성되고 실행되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 안전보건활동 및 성과가 우수한 수급인 사업장을 선정 · 육성하기 위해 수급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능력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리
 - 안전보건경영 시스템의 운영 및 실행에 조직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각 수급인 사업장별 평가에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참여도를 포함

3. 도급사업 단계별 검토 · 수행해야 할 안전보건활동은?

- ㉔ 도급사업 운영시 최초 단계에서부터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사업 수행 시 수급업체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실행과 평가, 환류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체계를 운영함이 필요함

〈도급사업 단계별 안전보건활동〉





도급사업 단계별 안전보건활동 내용

1. 도급사업 계약 시

① 도급사업의 검토

| 유해·위험 작업의 도급인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

▶ 도급하고자 하는 작업이 고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위험한 작업인지 확인

㉠ 안전보건상 유해·위험한 작업을 분리 도급 내지 하도급을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 도급을 줄 때 인가가 필요한 작업

- ① 도급작업
- ② 수은·납·카드뮴 등 중금속을 제련·주입·가공·가열하는 작업
- ③ 허가대상물질 제조·사용작업
- ④ 그 밖에 유해·위험한 작업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현재까지는 없음)

㉡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있어야 유해·위험 작업만 분리하여 도급을 줄 수 있고, 도급을 주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의 안전보건조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유해·위험 작업 도급 시 안전보건 조치 기준〉

유해·위험 작업의 종류	안전보건조치 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공동	제5조(오염된 바닥의 세척 등), 제7조(채광 및 조명), 제8조(조도), 제33조(보호구의 관리), 제72조(후드), 제73조(덕트), 제74조(배풍기), 제75조(배기구), 제76조(배기의 처리), 제77조(전체 환기장치), 제78조(환기장치의 가동), 제79조(휴게시설), 제79조의2(세척시설 등), 제80조(의자의 비치), 제81조(수면장소 등의 설치), 제83조(가스 등의 발산 억제 조치), 제84조(공기의 부피와 환기), 제85조(잔재물 등의 처리)
도급작업, 수은·납·카드뮴 등 중금속 제련·주입 ·가공·가열작업	제422조(관리대상 유해물질과 관계되는 설비), 제429조(국소배기장치의 성능), 제430조(전체 환기장치의 성능 등), 제431조(작업장의 바닥), 제432조(부식의 방지조치), 제433조(누출의 방지조치), 제434조(경보설비 등), 제435조(긴급 차단장치의 설치 등), 제439조(특별관리물질의 취급일지 작성), 제442조(명칭 등의 게시), 제443조(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저장), 제444조(빈 용기 등의 관리), 제448조(세척시설 등), 제450조(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등), 제451조(보호복 등의 비치 등)
허가대상물질 제조·사용 작업	제453조(설비기준 등), 제454조(국소배기장치의 설치·성능), 제455조(배출액의 처리), 제459조(명칭 등의 게시), 제461조(용기 등), 제463조(잠금장치 등), 제464조(목욕설비 등), 제465조(긴급 세척시설 등), 제468조(기록의 보존), 제469조(방독마스크의 지급 등), 제470조(보호복 등의 비치), 제471조(설비기준), 제472조(아크로에 대한 조치), 제473조(가열응착 제품 등의 추출), 제474조(가열응착 제품 등의 폐쇄), 제477조(격리), 제478조(바닥), 제479조(밀폐 등), 제480조(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등), 제481조(석면분진의 흩날림 방지 등), 제483조(작업복 관리), 제484조(보관용기)

Tip

▶ 도급인가 신청 방법

1. 신청서 제출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2. 제출서류
 - 도급대상 작업의 공정도(기계·설비의 종류 및 운전조건, 유해·위험물질의 종류·사용량, 유해·위험요인의 발생실태 및 종사 근로자 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도급계획서(도급사유, 도급 시의 안전·보건관리 및 도급작업에 대한 안전·보건 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

도급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수급인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

- 상시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추두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대상 사업의 종류 및 규모〉

사업의 종류	규모
1. 농업 2. 어업 3.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5. 정보서비스업 6. 금융 및 보험업 7. 임대업;부동산 제외 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 9. 사업지원 서비스업 10. 사회복지 서비스업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 안전보건관리규정에는 “수급인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함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내용〉

- 총칙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의 목적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재해예방 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
 - 수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 안전·보건교육
- 작업장 안전관리
- 작업장 보건관리
-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및 방법, 절차에 관한 사항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도급계약의 입찰

| 안전작업관련 사양서 제시

입찰참가업체 기준을 제시할 때 안전작업계획 관련 사항을 제시

- ㉠ 안전작업계획 주요 내용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안전보건교육 계획
 - 사용 기계 ·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 · 자격 · 경력현황
 -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3 입찰서류의 검토

| 안전보건관리 수행능력 평가

입찰 시 제시한 안전작업계획의 사양서 반영여부와 안전보건관리 수행 능력이 있는지를 검토

- ㉠ 안전부서, 기술부서, 작업부서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평가
- ㉡ 입찰서류 검토 및 평가
 - 안전작업계획 관련 제출서류가 사양서 기준에 충족한지 검토 및 평가
 - 인원 및 활동계획의 적정성
 - 산업재해 발생현황
 - 작업자의 자격 · 경력 등이 해당 작업에 적합한지 여부
 - 안전기준에 적합한 기계 · 기구 및 설비 보유 여부 등

| 안전보건능력 우선의 수급인 선정

- ㉔ 수급인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는 도급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도급인과 수급인간의 안전보건관리 협력이 매우 중요함
- ㉔ 안전보건관리 능력을 갖춘 수급인 선정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능력까지 포함하여 평가할 수 있는 종합평가방식 도입을 고려

사례 | 안전보건환경관리능력 평가를 통해 수급업체 선정(S사)

- ▶ 사업장별 안전보건환경 관리능력 평가를 실시하여 100점 만점에 70점 미만에 해당하는 수급업체는 탈락
 - 평가항목은 안전보건환경 경영체계/이행성 평가 및 실적평가로 구성(7개 분야, 23개 항목)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시 가점 부여

4 도급업체 계약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지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도급인과 수급인 근로자의 총괄적이고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안전보건총괄 책임자를 지정하여 산재예방업무를 총괄·관리

- ㉔ 다수의 근로자가 도급에 의해 같은 장소에서 작업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급 사업주는 도급인과 수급인 전체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함
- ㉔ (대상) 도급인, 수급인과 하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 ※ 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제조업, 토사석 광업은 50명 이상
- ㉔ (직무) ① 급박한 위험 또는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의 중지 및 재개
②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 조치
③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 감독 및 사용 협의·조정
④ 안전인증대상 및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의 사용여부 확인
⑤ 위험성평가의 실시
- ㉔ (지정방법)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
 - 관리책임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 사업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자로 지정

2. 도급사업 수행 시

①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 운영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

도급 사업 시 안전보건에 관한 각종 협의를 위하여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간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 ㉠ 도급인 사업주는 수급인 사업주 전원을 포함하여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여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 · 보존해야 함
- ㉠ (협의체 계획수립 시 고려사항) ①협의체 구성 및 운영방안 ②협의체 심의의결 사항 및 시행 방안 ③도급인, 수급인간 책임과 권한 명확화
- ㉠ (협의체 회의 개최)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개최, 결과를 기록 · 보존
- ㉠ (협의사항) 사업주간 협의체는 다음 사항을 협의하여야 함
 - ① 작업의 시작 시간
 - ② 작업 또는 작업장간의 연락 방법
 - ③ 재해발생 위험 시의 대피 방법
 - ④ 위험성 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⑤ 도급인과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 수급인과의 안전보건 소통채널 구축 · 운영

도급인과 수급인간 안전보건에 관한 소통을 위한 시스템 운영 필요

- ㉠ 도급인과 수급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안전보건 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조치를 위하여 온라인시스템 등 별도의 소통채널 구성 · 운영 필요

사례 | 수급인 공동이용 온라인시스템 운영(D사, S사)

- ▶ 온라인 시스템 운영을 통한 안전보건 현안 공유 및 대응
 - 이용가능자 : 도급인 근로자, 수급인 관리부서 담당자
 - 수급인과 신속한 정보전달, 자료공유
 - 도급인과 수급인, 수급인 상호간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② 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

도급인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수급인의 작업 및 해당 사업장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도급인과 수급인 또는 수급인 간의 작업 및 위험요인이 서로 관련되는 경우 이를 조정·관리하여야 함

- ㉠ “위험성평가”란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의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는 일련의 절차임
- ㉡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급인이 자발적으로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 수급인의 위험성 평가능력이 부족할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을 참여시켜 수급인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 법상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직무에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의 작업에 대해서까지 위험성평가를 관리해야 함
-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도급인·수급인 관계없이 위험성평가의 주체를 사업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 － 수급인은 해당 사업장 또는 공정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직접 실시해야 하고, 도급인이 지원하는 위험성평가 및 관련 교육에 성실히 참여하고,
 - － 사업주, 관리자, 근로자 등 구성원 모두가 위험성 평가에 참여하여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하며,
 - －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에는 ①위험성 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②위험성 결정 내용 ③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등에 대한 자료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함

③ 사업장 안전보건점검

| 작업장의 순회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

▶ 도급인 사업주는 작업장을 정기적으로 순회점검 실시

- ㉠ (점검주기) 1주일에 1회 이상
 - 단, 제조업, 토사석 광업,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은 2일에 1회 이상
- ㉡ 수급인 사업주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안되며, 도급인의 시정 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함

Tip

-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작업장 순회점검」은 사업주 의무이나, 반드시 사업주가 직접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 사업주가 경영관리, 시간적인 이유 등으로 직접 점검이 곤란하여 관리감독자 등에게 순회점검을 하도록 한 경우에는 점검의 결과 및 조치의 이행여부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으로 가능
 - 다만, 사업주의 지시에도 관리자가 순회점검을 하지 아니한 경우 동 규정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음

|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4항]

▶ 도급인 사업주는 수급인 사업주와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기·수시로 합동 안전·보건점검 실시

- ㉢ (구성) 도급인 및 수급인 사업주*, 도급인 및 수급인 근로자** 각 1명
 - * 같은 사업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사업장의 최고 책임자
 - ** 해당 공정 근로자만 해당(수급인이 다수인 경우 각 수급인 소속 근로자 1명씩 점검에 참여하며, 수급인 근로자는 해당 공정에 참여)

- ㉣ (점검주기) 분기에 1회이상
 - 단, 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2개월에 1회 이상



산업재해 위험 예방조치

| 산업재해 발생 위험장소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 도급인은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시 안전·보건 시설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실시

산재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20개)

1.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2.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3.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4. 비계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5. 간설통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6. 지반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
7.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8.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급금지 작업을 하는 장소
9. 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용접·용단 작업을 하는 장소
 - 가. 선박 내부 나. 특수화학설비 다. 인화성 물질을 취급·저장하는 설비 및 용기
10. 밀폐공간으로 되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장소
11.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 또는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12. 안전보건규칙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장소
13.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7호에 따른 유기화합물취급 특별 장소
14. 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해체·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15.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16. 프레스 또는 전단기(剪斷機)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장소
17.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한 정비·보수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18. 안전보건규칙 제574조 각 호에 따른 방사선 업무를 하는 장소
19.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
20.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㉔ 수급인 근로자는 도급인의 시설물에서 작업을 수행해야 하고, 수급인의 단독적인 재해예방 노력만으로는 산재예방에 한계가 있으므로,

－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근로자와 함께 작업하지 않더라도 도급인의 사업장 내라면 수급인 근로자가 일하는 위험장소에 대하여 산업재해예방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

㉔ 아울러,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예방 의무는 일차적으로 수급인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수급인 또한 안전보건상 조치를 하여야 함



Tip

- ▶ 고용노동부는 도급인에게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를 현행 “20개소”에서 “모든 장소”로 확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중임(‘16년)

| 위험작업 시 경보운영 및 운영사항 통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

위험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경보를 운영하고,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사고위험에 신속히 대처하도록 운영

- ㉔ 도급인은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화재가 발생하거나 토석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경보를 운영하고 수급인 및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경보운영 사항을 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함

경보장치 설치가 필요한 장소

- ① 하역운반기계 통로 인접 출입구 : 비상등·비상벨 등 경보장치(제11조)
- ② 연면적 400㎡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옥내 작업장 : 경보설비(제19조)
- ③ 폭발 또는 화재발생 위험장소 :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제232조)
- ④ 급성독성물질 취급 장소 : 감지·경보장치(제299조)
- ⑤ 터널공사 등 인화성가스 폭발·화재 위험장소 : 자동경보장치(제350조)
- ⑥ 금속류, 산·알칼리류, 가스상태 물질류 취급 장소 : 경보설비(제434조)
- ⑦ 방사선 업무 장소 : 경보시설(제574조)
- ⑧ 냉장실·냉동실 내부 : 경보장치(제632조)

| 공사기간 단축 및 위험공법 사용·변경 금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8항]

도급인은 수급인이 무리하게 공사진행을 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

- ㉔ 도급인은 수급인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할 수 있도록
 -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지 않아야 하고,
 -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해서는 안 됨

| 수급업체 위생시설 설치 또는 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9항]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

- ㉔ 도급인은 수급인이 위생시설(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에 관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수급인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사례 | 수급업체 근로자 위생시설 설치 등(H사, D사)

▶ 수급업체 근로자 전용 사무공간 및 편의시설 설치

- 수급업체 여성근로자 휴게실, 수급업체 전용 식당 설치
- 흡연 및 비흡연 휴게실, 샤워실, 세탁실, 탈의실 등 설치

▶ 협력사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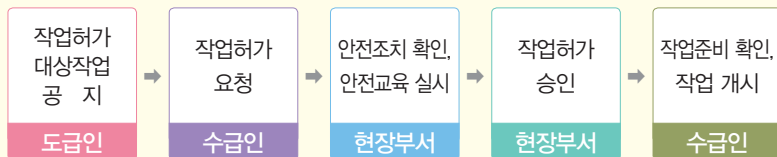
- 협력사 근로자 근골격계 질환예방을 위한 운동프로그램 지원
(재활마사지, 재활 테이핑, 재활체조 등)
- 운동상담 전문가를 통하여 협력사 근로자에게 맞춤형 운동프로그램 제공
- 협력사 대상 치과 진료 지원

| 유해·위험작업 안전작업 허가제 운영

특히 유해·위험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보건조치 이행이 포함된 작업허가를 받은 후 작업을 실시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

- ㉔ 도급작업이 특히 유해·위험한 작업인 경우 사전에 관련부서로부터 현장의 위험요인과 안전보건조치 이행에 대한 사항을 확인받고 작업을 시작하여야 함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절차(예시)



※ 안전담당부서는 현장 안전조치 이행여부 점검 및 안전관리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대상 유해·위험작업(예시)

- 유해·위험물질이 차있거나 차있었던 용기, 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시
- 용접·절단 또는 스파크나 다른 점화원이 발생하는 화기작업 시
- 밀폐 공간 출입 시
- 위험지역 내에서의 내연기관 운전 시
- 굴착 작업 시 • 전기 작업 시 • 방사능 사용 작업 시
- 고소 작업 시 • 중장비 작업 시

5 수급사업장 안전 · 보건교육 지도 · 지원

| 법정 안전 · 보건교육 지도 · 지원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 제31조]

- ▶ 도급인은 수급인이 실시하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조치 필요
- ⑥ 수급인이 도급사업장 내에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채용시, 정기, 특별교육 등)을 실시하고자 할 때
 - 도급인은 수급인의 원활한 교육실시를 위하여 교육장소, 교육자료, 강사 등 필요한 사항을 지도 및 지원해야 함

Tip

-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하여 도급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는 소속근로자에 대하여 안전 · 보건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공정의 일부를 도급에 의해 수행하는 경우 수급인이 소속 근로자에 대해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 도급인은 수급인이 행하는 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해야 함

| 사업장 특성별 안전보건교육 지원

- ▶ 법정교육 이외 작업장 특성, 수급인 근로자의 국적, 연령, 직종, 위험작업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 안전수칙 위반자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
- ⑥ 출입 전 안전교육 실시
 - 수급인 근로자가 정문 통과 시 회사 안전보건수칙 및 특별 위험작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

사례 | 출입전 교육-필수안전수칙(S사)

- ① 모든 작업은 작업허가증 최종 승인 후에 수행하여야 함
- ②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정해진 주기에 따라 유해공기(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야 함
- ③ 유해위험물질(황화수소, 황산, 알카리 등) 취급 및 작업을 할 때에는 지정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함
- ④ 고소지역 작업시 추락방지조치(비계 작업발판 설치 또는 안전방망 설치 또는 안전벨트 체결)를 하여야 함
- ⑤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검토(기술검토 또는 위험성평가) 후 작업하여야 함
- ⑥ 공정 및 전기설비의 보수작업을 할 때에는 해당 설비의 에너지원과 유해 물질을 차단/격리하고, 잠금조치와 꼬리표 부착을 하여야 함
- ⑦ 사내에서 차량 운전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안전벨트/안전장구를 착용하여야 함
- ⑧ 사내 허가된 지역에서만 흡연을 하여야 함

㉔ 작업 전 안전교육 실시

- 작업투입 전에 작업내용, 안전작업을 위한 주지사향, 보호구 착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
- 교육은 도급작업 관련 작업내용을 잘 알고 있는 부서에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안전관련 부서에 통보한 이후 안전작업 허가서 승인

㉔ 안전보건 체험교육장의 운영

- 안전보건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론과 체험교육을 병행하여 운영
- 특히, 체험교육은 근로자의 안전보건 지식 습득, 위험요인 대처능력 향상 등의 효과가 크므로 수급사업장 작업 특성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 · 운영함이 필요

사례 | 수급업체 근로자 교육과정 운영(S사, H사)

- ▶ 수급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과정 운영
 - 안전감시인 교육
 - 안전관리자 인증 교육
 - 정기 보수작업 안전보건교육
 - 최초 출입자 안전교육
 - 밀폐공간 특별 안전보건교육
- ▶ 실내 안전체험교육장 신설 및 운영
 - 안전벨트 및 개구부 추락 등 총 43개 체험교육과정 운영
 - 도급인과 수급인이 공동으로 연간 교육 실시

6 유해인자 및 화학물질 관리

1 작업환경측정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 제42조]

▶ 도급인은 수급인의 작업장소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

㉞ 작업환경측정은 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 분진, 유기용제 등 유해인자에 대하여 근로자의 노출정도를 측정·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설·설비 등을 개선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로

－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으로서 작업환경 측정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이 측정대상임

* ①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알칼리류, 가스상 물질류, 허가대상물질, 분진, 금속 가공유 등 화학적 인자(188종), ②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 이상의 소음 및 안전보건규칙 제558조에 따른 고열 등의 물리적 인자(2종)

㉞ 수급인이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의 작업장소를 포함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야 함

㉞ 임시작업*, 단시간작업**,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 분진작업 적용제외 작업장 등은 작업환경 측정 대상에서 제외됨

* 임 시 작 업 : 일시적으로 하는 작업 중 월 24시간 미만인 작업. 단, 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월 행하여지는 작업은 제외

** 단시간작업 :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 단,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일 수행되는 경우 제외

| 화학물질 취급 작업 시 안전보건 정보제공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5항]

화학물질 취급 설비의 개조·분해 및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시 수급인에게 안전보건 정보 제공

- ㉠ 화학물질 등을 취급하는 설비에서 행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물질	폭발성·발화성·인화성·독성 등 유해위험성이 있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
설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반응기·증류탑·배관·저장탱크 등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작업	개조·분해 또는 설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 위의 작업을 도급 시에는 도급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다음 사항을 적은 문서를 수급인에게 제공해야 함
 - 해당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유해·위험성
 -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조치의 내용
 -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와 일치하는 내용은 MSDS에서 발췌하여 다른 정보와 함께 하나의 문서로 제공해야 함(MSDS는 참고자료로 별도 제공)
- ㉠ 도급받은 작업을 수급인이 하도급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해당 하도급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해야 함
- ㉠ 수급인에게 정보를 제공한 도급인은 그 수급인(하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 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 위 법적 의무사항 이외 수급인에게 해당 작업의 절차, 유해·위험성 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함

3. 도급사업 평가 시

① 수급사업장의 안전보건수준 평가

수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수준 평가기준을 확립하고 평가를 통해 수준향상 유도

- 수급사업장의 안전보건 활동 수준 및 재해발생 수준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수급업체별 안전보건수준 평가 실시

② 평가결과에 따른 수급업체 관리 및 환류

평가결과 우수한 사업장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흡한 사업장은 수급업체 스스로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토록 관리

-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사업장은 포상 또는 도급 계약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 미흡한 사업장은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을 통해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도록 유도
- 평가를 통해 수급사업장의 안전보건 수준과 문제점 도출이 가능하며, 평가결과를 수급 사업장 지원방안 수립에 활용

사례 | 안전보건수준평가(S사)

- ▶ **평가 기준** : 안전보건환경(SHE) 경영 및 체계 등 7개 분야, 23개 항목으로 구성
- ▶ **평가 시기** : 2/4분기(20%), 3/4분기(20%), 연말 정기평가(40%), 감점/가점(20%)
- ▶ **포 상** : 안전보건수준 평가결과, 협의회 활동결과, 안전보건 점검결과를 종합하여 업무 유형별 4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포상

IV

도급계약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1. 목 적

- ①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 의무를 도급인과 수급인에게 공동으로 부여하고 있으나 수급인 사업장은 사업규모의 영세성, 도급인 사업장 내에 작업장소가 있는 등 자체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도급인 및 수급인 사업장 간 상호협력과 도급인의 지원과 배려가 필요하다.
- ② 이 가이드라인은 이를 위해서 도급계약 시 도급인이 조치하여야 할 사항과 수급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들을 제시함으로써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2. 적용 범위

- ① 이 가이드라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의한 사업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 ① “도급인”이란 업무를 도급하거나 업무의 처리를 위탁한 업체를 말한다.
- ② “수급인”이란 업무를 도급받거나 업무의 처리를 위탁받은 업체를 말한다.
- ③ “도급 계약”이란 수급인이 어느 업무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도급인이 그 업무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을 말한다.

4. 도급 계약 시 명시하여야 할 사항

1) 안전보건 교육

- ① 도급인은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수급인이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요청할 경우 도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위험성평가

- ① 도급인은 도급사업 시작 전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미리 위험성을 감소 시키고, 수급인이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평가 결과를 수급인에게 제공한다.
- ②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급인이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 운영

- ① 도급인의 사업주는 수급인의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는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 · 운영한다.
- ②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의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위험성평가 실시,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 ③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4) 안전보건 점검

- ① 도급인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의 수급인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2개월 또는 분기에 1회 이상 작업장에 대한 합동 안전 보건점검을 실시한다.
- ② 도급인의 사업주는 작업장에 대한 순회점검을 2일 또는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사업주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점검결과 도급인인 사업주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5) 안전보건 정보제공

- ① 도급인은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 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한다.
 -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 ② 수급인은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한다.
- ③ 정보를 제공한 자는 해당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6) 공사기간 등 준수

- ① 도급인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공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도급인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수급인이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 가시설 설계의 보강 등을 요청할 경우 도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증가된 비용에 대해서 도급 금액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7) 작업환경

- ① 도급인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 위생시설 : 휴게시설, 세면 · 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 ② 도급인의 사업주와 수급인의 사업주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8) 안전보건 조치 이행

- ① 도급인 사업주는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② 도급인 및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가 심의 · 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사내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제조 · 서비스업 등

펴낸 이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 화 진
산업안전과장 황 종 철
사무관 류 관 훈
근로감독관 오 현 석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부장 현 종 수
산업안전차장 강 규 철

발행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발행일 2016년 6월

전화 (044)202-7729

인쇄 대양 (052)248-2181

* 비매품